

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

_____(이하 “사업주”라 함)과(와) _____(이하 “근로자”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개시일 : 년 월 일부터

※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” 등으로 기재

2. 근무장소 :

3. 업무의 내용 :

4.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

	()요일	()요일	()요일	()요일	()요일	()요일
근로시간	시간	시간	시간	시간	시간	시간
시업	시 분	시 분	시 분	시 분	시 분	시 분
종업	시 분	시 분	시 분	시 분	시 분	시 분
휴게 시간	~ 시 분	~ 시 분	~ 시 분	~ 시 분	~ 시 분	~ 시 분

○ 주휴일 : 매주 __요일

5. 임금

- 시간(일, 월)급 : _____원(해당사항에 ○표)
- 상여금 : 있음 () _____원, 없음 ()
- 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있음 : _____원(내역별 기재), 없음 (),
-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: _____ %

※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 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%이상의 가산임금 지급('14.9.19. 시행)

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_____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지급(),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()

6. 연차유급휴가: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

7. 사회보험 적용여부(해당란에 체크)

☐ 고용보험 ☐ 산재보험 ☐ 국민연금 ☐ 건강보험

8. 근로계약서 교부

- “사업주”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“근로자”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“근로자”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
9.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

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
10. 기 타

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

년 월 일

(사업주) 사업체명 : _____ (전화 : _____)

주 소 : _____

대 표 자 : _____ (서명)

(근로자) 주 소 : _____

연 락 처 : _____

성 명 : _____ (서명)

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

대상자	성 명			외 국 인 등록번호				
	학과(전공)			이수학기				
	전화번호			e-mail				
취업 예정 근무처	업 체 명							
	사 업 자 등록번호				업 종			
	주 소							
	고 용 주	(인 또는 서명)			전화 번호			
	취업기간				급여 (시급)			
	근무시간						평 일 : 총 시간	주말 : 총 시간
		요일	월	화	수	목	금	토 일
시간								

위 유학생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,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 학업(또는 연구 활동)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, 이에 확인합니다.

20 . . .

※ 시간제 취업허가 [한국어능력기준 제출자]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,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은 25시간),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.

▶ 한국어능력기준(토픽 기준) : 어학연수 2급, 전문학사 3급, 학사(1~2학년) 3급, 학사(3~4학년) 4급, 석박사 4급이상 ◀

- 한국어 능력기준 미달할 경우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과 학부생 10시간, 석박사과정 15시간으로 제한 -

※ 시간제취업 허가 전 취업할 경우 [유학생과 고용주]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(허가된 근무처에서만 취업 활동 가능)

춘천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 귀하

유학생담당자 확인란	소속	강원대학교	성명	(인 또는 서명)
	인증대학 여부	해당 ☐ 비해당 ☐		
	직위 (연락처)			